

KCGVA - Dive Assist

다이빙 상해 공제

약관



(안내사항) 본 공제 약관은 대한민국의 공제사업자인 사단법인 한국해양경찰경우협회의회에서 영국 소재 재보험자인 Dive Master Insurance Consultant Ltd 및 라트비아 소재 온라인 판매처인 Dive Assist Group SIA와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판매하는 상품으로, 영문 약관을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령 및 보험실무를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약관 내용 중 국내법과 상이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국내법이 우선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Dive Assist 다이빙 상해 공제 약관

공제사업자는 본 공제 약관의 조건 및 면책조항에 따라 피공제자가 레크리에이션 다이빙에 참여하는 동안 입은 사고로 인한 상태에 대하여 보장부문 요약서(Schedule of Benefits)에 명시된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함에 동의합니다.

목차

1	중요 정보	4
2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사항	6
3	기왕증(Pre-existing medical conditions)	7
4	건강상태의 변화/진단받은 새로운 의학적 상태	7
5	가입 철회 및 철회 기간	8
6	공제사업자의 계약 해지권	8
7	공제 상품 관련 민원	10
8	24시간 응급 지원	11
9	일반 정의 조항	12
10	공제 계약의 성립과 효력	15
11	일반 조건(모든 섹션에 적용)	14
12	정보보호법 – 개인정보	17
13	일반 면책 조항 (모든 섹션에 적용)	18
14	보장내용 상세	21
15	보장 부문 1 – 응급 의료 및 기타 비용	21
16	보장 부문 2 – 수색 및 구조	22
17	보장 부문 3 – 합리적인 교통 및 숙박 비용	22
18	보장 부문 4 – 사망/영구장애에 대한 위로금	22
19	보장 부문 5 – 귀환 이후의 의료비	23
20	보장 부문 6 – 민사상 배상책임	24
21	공제금 청구 방법	25
22	사기성 공제금 청구	25
23	다이버 어시스트 상해보상공제 가입자를 위한 치료 업체	26

중요 정보

공제사업자

대한민국에서 판매되는 본 상품은 “공제상품”이며, 본 약관에서 표기하는 **공제사업자**는 아래 **공제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사단법인 한국해양경찰경우협의회 Korea Coastguard Veterans Association(KCGVA)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민원 2동

대표자 : 송나택

사업자등록번호 : 477-82-00657

전화번호 : 02-2245-0555

E-mail : yskim@kcgva.kr

상기 **공제사업자**는 해당 공제상품에 대하여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약관은 **피공제자**와 **공제사업자** 사이의 계약이며, Dive Assist Group SIA 및 국가별 협력사업자(대한민국의 경우 해경 경우 협의회)에게 발행된 통합증권(Master Policy)에 추가됩니다.¹ 이 약관은 공제 상품 가입 명세서(Schedule) 및 변경사항에 대한 배서와 함께 이 공제 증서를 구성합니다. 법적 계약이므로 모든 내용을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보장내용

이 공제는 **피공제자**가 **레크리에이션 다이빙** 및 ‘스쿠버(잠수용 호흡기)’를 사용하지 않은 작살 낚시²에 참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본 약관의 조건 및 면책 사항을 기준으로 **피공제자**에 보상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미국, 캐나다 및 그 영토 또는 소유물의 거주자에 대한 보장은 미국, 캐나다 및 그 영토 또는 소유물 외부에서 발생하는 **사고** 및 비용으로 제한됩니다.

본 다이브 어시스트 다이빙 상해보상 공제 약관은 보상의 여부, **귀하**가 준수해야 할 조건, 공제금 지급사항에 대한 기준이 됩니다.

다이브 어시스트 다이빙 상해 공제의 공제 가입확인서(Certificate) 및 배서(Endorsement)는 모두 증서의 일부를 형성합니다. 공제 증서는 **귀하**와 당사 간의 법적 공제 계약임을 알려드립니다.

당사는 **귀하**가 납부하기로 동의한 공제료의 대가로 이 공제증권에 기재된 보장내용을 제공합니다.

귀하는 아래의 중요한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공된 모든 정보(해당하는 경우 질문서/진술서 포함)의 정확성 및 적절성을 읽고 검토하였습니다.
- **귀하**가 당사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변경 사항에 대해 당사에 알리지 않는 경우에는 **귀하**의 공제 계약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귀하**의 공제금 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공제금 청구 금액을 일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귀하**의 증서, 보장내용, 보상 수준, 가입금액이 **귀하**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수정이 필요한 경우 보험증서를 **관리자(Administrator)**에게 반환하십시오.
- 본 약관에서 규정한 **귀하**의 의무를 모두 준수하여야 합니다.

¹ 재보험 계약 권한을 가진 영국 소재 Dive Master Insurance Consultants Limited가 온라인 판매처인 Dive Assist Group SIA 및 각 국가/지역의 협력 공제/보험사업자와 맺은 총괄 계약을 통합증권이라고 하며, 각 국가/지역의 사업자와 개별 가입자간 체결한 계약은 통합증권의 일부로써 추가된다는 의미입니다.

공제 증서가 발행된 이후 필요한 변경사항은 별도의 배서(endorsement) 및/또는 확인서(certificate)로 확인됩니다. 참고해야 할 경우를 대비하여 약관 서류와 함께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당사의 책임은 공제 증서에 명시되거나 배서에 따라 수정된 보장 수준 또는 가입금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이 증서는 개인 의료보험, 일반 건강보험 증권이 아닙니다.

이 공제 상품은 개인 의료 보험이 아니며 **다이빙 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보상을 제공합니다.** 피공제자가 당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개인적인 치료를 선택한 경우 해당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국가간 상호 의료 협약(국적지 외에서의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적용 협약)이 존재하지 않고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거나 가장 의학적으로 적절한 서비스가 민간 의료 시설에서만 이용 가능한 경우에만 개인 치료 비용을 지불합니다.

또한 당사는 적절한 경우 사설 의료 시설에서 공공 의료 시설로의 이관 조치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의료비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귀하**는 당사 또는 당사 대리인이 **귀하**의 모든 의료 기록 및 의료 정보에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증서상 용어 사용에 대한 사항

증서 약관, 다이브 어시스트 다이빙 상해 공제 가입확인서(certificate) 및 배서(endorsement)에서 단수형 단어는 복수형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을 의미하는 단어는 여성과 중성을 의미합니다. '사람(a person)'의 의미에는 개인, 회사, 파트너십 또는 기타 법인도 포함됩니다. 성문법에 대한 언급에는 모든 개정, 교체, 명령 또는 규정도 포함됩니다. 일부 단어는 굵은 글꼴로 표시되어 있으며 이는 본 증서 일반 정의 조항(General Definitions)에 특정 의미로 정의된 단어입니다.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사항

귀하는 당사가 요청하는 질문에 답변할 때 제공된 모든 정보가 정확하고 완전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귀하가 고의로 또는 무모하게(중과실로)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당사에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면 당사는 이 공제 계약을 소급하여 무효로 하고 모든 공제금 청구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피공제자**의 일부 인원이 고의로 또는 무모하게(중과실로)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귀하**에게 알려지지 않은 경우 당사는 해당 **피공제자**의 일원에 관한 한 이 증서를 소급하여 무효로 하고 모든 공제금 청구를 거부합니다.²

모든 **피공제자**는 질문에 대한 답변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공된 모든 정보가 정확하고 완전하도록 기재하여야 합니다. **피공제자**가 다이브 어시스트 공제 상품 가입과 관련하여 제공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것으로 판명되면, 이 증서 전부 또는 일부, 그에 따른 공제금 청구의 유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 당사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이 다이브 어시스트 다이빙 상해보상공제 증서를 소급하여 무효로 하고, 공제금 지급을 거절하고 수령한 공제료는 반환합니다. 당사가 정보의 부정확성을 알았더라면 공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피공제자**에 대한 조건을 변경합니다. **귀하**의 부주의로 인하여 공제금 청구가 당사에 불이익을 주는 경우 변경된 조건을 소급 적용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해당 **피공제자**에 대해 추가공제료를 청구하거나 **귀하**가 지급한 공제료와 당사가 알았더라면 청구했을 공제료의 비율로 당사가 지급할 공제가입금액을 줄입니다.
- 당사의 취소권에 따라 공제 계약을 취소합니다.

² 해당 조항이 아래의 대한민국 상법과 상충하는 경우에는 상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650조(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 ①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지체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 1 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성립 후 2 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 ②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제사업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③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공제사업자는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한다.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공제사업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공제사업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52조(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 ①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공제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공제사업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 월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② 공제사업자가 제 1 항의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 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53조(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위험증가와 계약해지) 보험기간중에 보험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는 공제사업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당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귀하에게 서면 안내(이메일 포함)를 드립니다.

- 귀하의 공제 가입 자격을 무효화하고자 하는 경우
- 귀하의 공제 약관 또는 증서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
- 공제 계약 유지를 위하여 추가 공제료의 지급이 필요한 경우

귀하가 당사에 제공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가능한 한 빨리 당사에 알려야 합니다.

기왕증(Pre-existing medical conditions)

공제사업자가 서면으로 보장에 동의하지 않는 한, 기존의 질병(기왕증) 또는 **인증된 다이빙 기관(Authoritative diving body)**이 다이빙 적합성 설문지에서 잠수 금지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명시한 의학적 상태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건강상태의 변화, 진단받은 새로운 의학적 상태(medical condition)

귀하의 공제 계약은 귀하의 자격 인증(certifying) 스쿠버 다이빙 또는 프리 다이빙 협회의 다이빙 적합성 요건을 충족함을 전제로 제공됩니다.

다이빙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나타난 의료 또는 건강 상태가 있는 경우 다이빙을 계속하기 전에 귀하의 스쿠버 다이빙 또는 프리다이빙 협회 및 귀하의 의료/건강 고문의 검토 및 동의를 위해 그들에게 이를 공개해야 합니다.

귀하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동안 다이빙 기준 또는 다이빙에 대한 귀하의 협회의 적합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그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한 공제금 청구는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공제 기간 동안 레크리에이션 다이빙 사고를 당한 경우 부상이 완전히 해결되어야 하며 그 이후 다이빙을 다시 시작할 때 **다이빙에 의학적으로 적합(medically fit to dive)**해야 합니다.

가입 취소 및 철회 기간

피공제자의 공제 계약 취소는 **공제 기간** 개시 이전에만 가능합니다.

공제 기간 개시일 이전에 아래 공제사업자에 요청하면 공제사업자는 관리자(Administrator)인 Dive Master Insurance Consultants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제료를(※) 환불 받을 수 있으며 피공제 자격 및 공제 계약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취급됩니다.

- ※ **환불관련 카드사의 환불 수수료 또는 은행 수수료는 피공제자 부담임을 알려드립니다.**
- ※ **홈페이지에서 가입 및 공제로 납부와 동시에 관리사와의 재공제계약까지 일괄처리 되므로 가입 취소는 영국 소재하고 있는 관리사의 승인이 필요하며 취소 승인 권한은 관리사에 있으며, 승인에는 3~5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가입 취소에 따른 공제로 환급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사단법인 한국해양경찰경우협의회 Korea Coastguard Veterans Association(KCGVA)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민원 2동

대표자 : 송나택

사업자등록번호 : 477-82-00657

전화번호 : 02-2245-0555

E-mail : yskim@kcgva.kr

당사의 계약 해지권

당사는 **귀하**에 육십(6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 공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지합니다.³

- 공제로 미납
- **귀하**에게 공제 상품의 보장 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위험의 변화

³ 해당 조항이 아래의 대한민국 상법과 상충하는 경우에는 상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650조(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 ①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지체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성립 후 2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 ②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③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한다.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52조(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 ①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② 보험자가 제1항의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53조(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위험증가와 계약해지)

보험기간중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당사가 요청하는 정보 또는 문서의 비협조 또는 제공 실패

이 공제 계약이 당사에 의해 해지된 경우 공제금 청구 또는 공제금 청구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 해지 시점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한 공제료를 차감한 미경과 공제료를 환불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비례적으로 계산됩니다.

이 경우 당사가 공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귀하**에게 통지하고 **귀하**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 또는 이메일 주소로 해지 통지서를 보내드립니다.

공제 상품 관련 민원

공제 계약 관련 불만족 사항이 있거나 민원을 제기하려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언제든지 민원을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해양경찰경우협의회 Korea Coastguard Veterans Association(KCGVA)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민원 2동

대표자 : 송나택

사업자등록번호 : 477-82-00657

전화번호 : 02-2245-0555

E-mail : yskim@kcgva.kr

마찬가지로, **귀하는 귀하의** 청구 또는 민원 사항을 처음으로 전달하거나 **귀하의** 불만 사항이 처리된 방식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다음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Dive Master Insurance Consultants Ltd,

17-23 Rectory Grove, Leigh-on-Sea, Essex, SS9 2HA, United Kingdom.

Tel: +44 (0) 1702 476902 Fax: + 44 (0) 1702 471892

Email: sales@divemasterinsurance.com

24시간 응급 지원

24시간 응급 지원 서비스 관련 연락처:

Northcott Global Solutions Ltd (응급지원 회사)

Telephone +44 (0)207 183 8910 Back Up Mobile: +44(0) 7785627433

Email: ops@northcottglobalsolutions.com

응급지원 회사에 연락할 때 귀하가 다이브 어시스트 다이빙 상해 공제에 가입되어 있음을 알리고 공제 상품 가입 명세서(schedule)에 기재된 회원 ID(Membership reference ID) 또는 인증서 번호(Certificate Number)를 알려주십시오.

귀하는 다음 조치를 취하기 전에 응급지원 회사에 연락해야 합니다.

1 병원, 진료소 또는 요양원에 입원 환자로 입원하는 경우.

상태의 심각성으로 인해 이것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귀하는 입원 후 가능한 한 빨리 응급지원 회사에 연락해야 합니다.

2 본국 송환 준비

3 피공제자 시신의 매장, 화장 또는 운송

4 예정된 병원 이송 또는 귀국 비용 발생

응급지원 회사에 연락이 되고 귀하의 청구가 유효한 경우, 숙련된 지원 상담사(coordinator)는 필요한 의료비가 보증(guarantee)되고 적절한 송환/교통이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마련되도록 처리합니다.

응급지원 회사는 아래 예와 같이 다양한 상황에 대한 조언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의료진 및 병원과 연락
- 필요한 경우 의료비 지급 보증
- 필요한 경우 의료 에스코트와 함께 응급 송환 준비
- 당신이 병원에 입원할 경우 귀하의 집단의 다른 구성원에게 안내
- 항공사에서 분실 또는 지연된 수하물을 찾는 방법에 대한 조언
- 대사관, 영사관 또는 기타 법률 상담원의 소개.
- 출발을 놓친 경우 다음 여행 티켓 마련
- 여행 전에 다음과 같은 조언을 제공합니다.
 - 사용할 통화 및/또는 여행자 수표
 - 은행업무시간
 - 필요한 모든 비자 입국 요건 및 허가
 - 접종 요건
 - 방문하는 국가의 사용 언어 및 시간대.

일반 정의 조항

본 약관에서 아래의 단어나 문구가 굵은 글꼴로 표시된 경우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사고 (Accident(s))

식별 가능한 시간과 장소에서 발생하는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비정상적이고, 특정한 사건.

우연한 신체 상해 (Accidental Bodily Injury)

우연한 수단에 의해서만 발생하고 사고 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질병이나 기타 원인과는 관련 없이 **피공제자**의 사망 또는 장애를 초래하는 부상

관리사 (Administrator)

Dive Master Insurance Consultants Limited
17-23 Rectory Grove, Leigh-on-sea, Essex, SS9 2HA, UK
Telephone: +44 (0) 1702 476 902
Email: sales@divemasterinsurance.com

응급지원 회사 (Assistance Company)

Northcott Global Solutions Ltd
Telephone: +44 (0)207 183 8910 Back up Mobile: +44(0) 7785627433
Email: ops@northcottglobalsolutions.com

공인된 다이빙 조직 (Authoritative Diving Bodies)

안전한 다이빙 관행을 위해 회원에게 지침 및 권고 사항을 제공하는 인정된 국가 및 국제적 통제 기관 또는 Recreational Scuba Training Council (RSTC) 또는 Confédération Mondiale des Activités Subaquatiques (CMAS) 또는 European Underwater Federation (EUF)와 연계된 기관을 의미합니다. PADI, SSI, BSAC, VDST, FEDAS and NAUI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또한 무호흡 또는 프리다이빙 활동의 경우 AIDA도 포함됩니다.

공제 사고 처리담당자 (Claims Handler)

Dive Master Insurance Consultants Limited
17-23 Rectory Grove, Leigh-on-sea, Essex, SS9 2HA, UK
Telephone: +44 (0) 1702 476 902
Email: Claims@divemasterinsurance.com

당사/공제사업자/우리 (Company/Insurers/We/Our/Us)

사단법인 한국해양경찰경우협회 Korea Coastguard Veterans Association(KCGVA)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민원 2동
대표자 : 송나택
사업자등록번호 : 477-82-00657
전화번호 : 02-2245-0555
E-mail : yskim@kcgva.kr

발행일 (Date of Issue)

다이브 어시스트 다이빙 상해 공제 가입증명서(Certificate)에 명시된 이 공제증서가 발급된 날짜.

가족 (Family)

최소 최근 6개월 동안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성인 최대 2명과 발행일 현재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종일 교육을 받는 경우 24세 미만)의 모든 부양 자녀.

지리적 제한 (Geographical Limits)

보장부문 1~5 : 전세계

- 미국, 캐나다 및 그 영토 또는 소유지에서 최대 체류 기간은 **공제 기간** 중 한번의 체류 기준으로 30일로 제한됩니다.
- 미국, 캐나다 및 그들의 영토 또는 소유지 거주자의 경우, 공제 계약은 미국, 캐나다 및 그들의 영토 또는 소유물 외부에서 발생하는 **사고** 및 비용에만 적용됩니다.

보장부문 6 : 미국, 캐나다 및 그 영토 또는 소유지를 제외한 전 세계

신체 상해 (Injury)

다음과 같은 신체 상해:

- **사고**에 기인한 상해 및
- **사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피공제자**의 사망 또는 장애.
상해로 인해 직접적으로 초래된 질병 또는 해당 상해에 필요한 의학적 또는 외과적 치료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이빙 사고 외의 다른 원인이 개입되지 않아야 합니다. (solely and independently of any other cause)

피공제자 (Insured Member(s)/You/Your)

대한민국의 **공제사업자**와 업무협약을 맺은 Dive Assist에 가입하고, 공제 가입증서(Certificate)에 **피공제자**로 명기되고 가입하고자 하는 공제상품에 대한 공제료를 납부한 자

개업의(Medical Practitioner)

귀하 또는 **귀하와** 함께 여행하는 사람과 관련이 없고, 진료를 하고 있는 국가의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의료계의 등록된 진료 회원을 의미합니다.

의학적으로 다이빙에 적합 (Medically Fit to Dive)

- 다이빙을 배우고 있거나 감독 또는 훈련을 받는 다이빙을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의학적 적합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강습 또는 감독을 제공하는 공인된 다이빙 조직이 인정하는 의료 질문서를 작성합니다.
의료 질문서의 질문에 "예"라고 답한 경우 **귀하**는 **레크리에이션 다이빙**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의사로부터 다이빙을 하기에 적합하다는 추가적인 의학적 확인을 구하기 위해 권장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지역 또는 국가 법률에 따라 달리 요구되는 경우 **레크리에이션 다이빙**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신체적으로 다이빙에 적합하다는 진단서를 제시하십시오.
- 교육을 받거나 감독을 받지 않는 인증받은(Certified) 레크리에이션 다이버의 경우,
레크리에이션 다이빙 또는 교육에 참여하기 전에 **귀하**의 공인된 다이빙 조직이 정한 의료 적합성 요구 사항을 계속 충족해야 합니다. 적용 범위가 지속적으로 유효하려면 모든 후속 **레크리에이션 다이빙** 활동 중에 이러한 의료 적합성 요구 사항을 항상 충족시키는 것이 **귀하**의 의무입니다.
- **귀하**가 다이버 인증받은(certified) 이후 의료 또는 건강에 발현되거나 건강 변화가 있는 경우,
귀하는 **귀하**의 스쿠버 다이빙 또는 프리다이빙 협회와 **귀하**의 의료/피트니스 조연자에게 다이빙을 계속하기 전에 검토 및 동의를 위하여 해당 변경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 다이빙 기준 또는 다이빙에 대한 **귀하**의 협회의 적합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적합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이빙을 하는 경우, **귀하**의 당사에 대한 후속 공제금 청구를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공제 기간(Period of Insured Membership)

다이브 어시스트 공제 가입 증서(Certificate)에 명시된 기간입니다.

거주지

피공제자가 공공/국가 의료 서비스에 따라 세금,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등록된 국가의 주요 주소를 의미합니다.

레크리에이션 다이빙

레크리에이션 스노클링, 레크리에이션 숨참기, 프리 다이빙 및 무호흡 다이빙(Apnoea), 대한민국 해양수산부(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가 승인한 법령/법규/조례 등을 준수한 과학 및 고고학 또는 영화 및 미디어 다이빙, 스쿠버를 사용하지 않는 작살 낚시, **레크리에이션 다이빙**.

수중 호흡기(rebreather) 다이빙 및 테크니컬 다이빙은 스쿠버 또는 수면 공급 다이빙(surface supply diving)을 목적으로 제작된 표준 제조업체의 다이빙 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하는 동안 그리고 **피공제자**가 해당 장비의 사용을 중단하고 제거할 때까지입니다.

공제 계약의 성립과 효력

귀하의 공제로 지급의 대가로 당사는 다음을 조건으로 본 증서에 명시된 사항과 범위 내에서 공제 보상을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1. 귀하는 이 증서, 공제가입확인서(Certificate), 추가 배서들에 포함된 모든 공제 조건 및/또는 면책 사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2. 당사의 책임은 여기에 명시된 보장 수준 또는 보상한도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일반 조건(모든 섹션에 적용)

1. 레크리에이션 다이빙

레크리에이션 다이빙은 공인된 다이빙 조직이 수립한 안전한 다이빙 실무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권장 사항에 따라 또는 공인된 다이빙 조직이 승인한 교육 하에 수행되며, **귀하**는 의학적으로 다이빙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레크리에이션 다이버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모든 도전적인 다이빙(challenging diving)⁴ 자격을 갖춘 것은 아닙니다. 스쿠버 다이빙 인증 협회(공인된 다이빙 조직)는 점진적인 진도를 통해 다이빙 깊이와 경험을 높이고 경험의 증거로써 이를 기록할 것을 권장합니다.

A 반대로 우리는 기록된 경험을 통해 특정 도전적인 다이빙을 다이빙할 실력(qualified)이 있는 레크리에이션 스쿠버 다이버가 많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으나, 이러한 단순한 경험과 실력을 기준만으로는 도전적인 다이빙에 참여하도록 인증(certified)된 것은 아닙니다.

B 이 약관과 관련한 모든 공제 사고 상황과 관련하여, 당사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귀하**의 다이버 인증(certification) 및 기록된 다이빙 경험을 모두 고려할 것입니다.

중요 사항: 본 조항은 일반 조건 3.D항을 따릅니다.

2. 주의사항

피공제자는 반드시:

- A 본 증서의 공제 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예방 조치를 취하십시오.
- B 의학적 조언에 반하여 또는 의학적 치료를 받기 위해 여행을 예약하거나 여행을 감행하지 않습니다.

3. 공제사고

본 공제 증서에 따라 공제 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이 있는 경우, **피공제자**는 25페이지에 자세히 설명된 “공제금 청구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A **공제사업자**의 요청에 따른 사고와 관련한 모든 입증, 정보, 증거를 제공합니다.

(이에 대한 비용은 **공제사업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B **공제사업자**가 정한 모든 기한을 준수하면서 **공제사업자**가 요구하는 모든 협조를 제공합니다.

C 정보 공개, 입증사항, 증거 및/또는 문서 작성 및 협력 제공에 대한 법원이나 법적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정한 모든 기한을 준수합니다. **공제사업자**의 서면 동의 없이 **피공제자**는 어떠한 인정, 제안, 약속, 지불 또는 배상을 하거나 받으면 안됩니다.

⁴ Challenging Diving은 레크레이션을 넘어서는 다이빙으로써 Technical diving, 동굴 다이빙,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다이빙 등을 의미합니다.

D "다이빙 어시스트 다이빙 상해 공제 가입자를 위한 치료 업체"(26-27페이지)에 기재된 지역 중 하나에서 사고 또는 부상이 발생한 경우, **피공제자**는 나열된 의료 시설 중 하나에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대체 시설도 사용할 수 있지만 **응급지원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 하나의 **사고**와 관련하여 지급할 공제금의 총액(total sum payable)은 공제 가입 명세서(Schedule)에 명시된 합산 한도액(aggregate sum)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사고발생시 공제사업자의 권리

공제사업자는 **피공제자**의 이름으로 배상 또는 손해에 대한 공제사고의 방어, 합의 또는 변호를 인수하고 수행하거나 **피공제자**의 이름으로 손해 배상 또는 손해 배상 청구 등을 기소할 권한이 있지만 의무는 아닙니다. **공제사업자**는 모든 절차 수행 및 공제사고 합의에 있어 전적인 재량권을 가집니다.

5. 적용법 및 재판관할권

본 공제 증서 및 약관은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규율 및 해석되며 대한민국 법원의 배타적 관할권에 따릅니다.

6. 보상되지 않는 비용

피공제자의 공제조건에서 보상하지 않는 비용 및/또는 경비를 **공제사업자**가 부담/지급한 경우 **공제사업자**가

- 귀하를 대신하여 또는
- 귀하의 본 증서의 공제조건 및 제한사항 등의 불이행에 따른 결과로 인하여 **공제사업자**가 부담한 모든 추가 또는 증가된 비용 및/또는 경비가 있는 경우,

귀하는 **공제사업자**가 요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러한 모든 비용 및/또는 경비를 **공제사업자**에게 상환해야 합니다.

7. 타보험(other insurance) 또는 배상

A 공제금 청구가 있고 동일한 사고를 보장하는 다른 보험(또는 공제)이 있는 경우, 이 증서는 해당 다른 보험에서 지불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B **피공제자**가 동일한 사고에 대해 다른 보험(또는 공제)으로부터 보험금(또는 공제금)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당사는 그러한 보험금(또는 공제금)과 비용 및 경비에 대한 당사의 비례 부담금 이상을 지불할 책임이 없습니다.

정보보호법 – 개인정보

피공제자는 여기에 포함되거나 본 계약의 가입을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가 **공제사업자**의 데이터 파일에 포함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그러한 데이터의 처리는 **피공제자**와 **공제사업자**를 구속하는 계약 관계의 수립 및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공된 개인 데이터는 사기 방지 또는 공동 보험(공제포함)/재보험(재공제 포함) 목적을 위해 통계적 목적(가격 책정 및 위험 선택을 가능하게 하고 보험 기술에 대한 연구 준비를 위해) 보험 분야의 다른 보험사(또는 **공제사업자**) 또는 공공 기관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해당사자는 정보보호법에 규정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해양경찰경우협의회에 정보에의 접근, 수정, 취소 또는 반대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피공제자**가 아닌 사람에 관한 정보가 이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앞서 언급한 단락(이해 당사자)에 제공된 사람에게 사전 통지해야 합니다.

사단법인 한국해양경찰경우협의회가 처리하는 **귀하**의 정보는 Dive Assist Group SIA 및 Dive Master Insurance Consultants Ltd 가 처리하는 파일에도 통합되며, 이러한 **귀하**의 정보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에는 정보보호법의 영향이 미치지 않습니다.⁵ **귀하**가 달리 지시하지 않는 한 계약 관계가 종료된 후에도 보험(또는 공제) 활동과 관련된 보험(또는 공제) 상품 및 서비스에 관한 상업적 제안을 **귀하**에게 알리고 문자 메시지 또는 이메일을 통해 그러한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할 가능성을 포함하여 책임을 집니다.

전자적 수단(예: 이메일 또는 문자 메시지)을 통해 상업적 연락을 받고 싶지 않은 경우 yskim@kcgva.kr 또는 admin@diveassist.org로 연락하여 특정 종류 또는 전체의 상업적 연락을 받고 싶지 않다고 알려주십시오.

귀하는 **귀하**의 신분증 사본과 함께 서신을 사단법인 한국해양경찰경우협의회로 보내어 언제든지 **귀하**의 정보 데이터 보유를 접근, 수정, 취소 또는 반대할 권리를 행사하거나 동일한 사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해양경찰경우협의회 Korea Coastguard Veterans Association(KCGVA)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민원 2동

전화번호 : 02-2245-0555

E-mail : yskim@kcgva.kr

사단법인 한국해양경찰경우협의회는 개인정보 데이터 처리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 **귀하**의 정보를 처리합니다.

⁵ 해당 공제상품 가입 및 재보험(재공제) 처리를 위하여 공제사업자에 제공된 정보를 Dive Assist Group SIA 및 Dive Master Insurance Consultants Ltd에 제공 및 관련 업체가 해당 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 면책 조항 (모든 섹션에 적용)

다음의 피공제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 A 레크리에이션 다이빙 사고의 결과가 아닌 여하한 공제금의 청구
- B 발행일 기준으로 70세 이상인 자로서 다이빙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건강 검진 후 이 공제에 의해 서면으로 특별히 수락되지 않은 자
- C 레크리에이션 다이빙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다이빙에 의학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공제 사고.

2 피공제자의 고의적, 악의적 또는 범죄 행위 또는 피공제자의 법률 위반 또는 법령 위반으로 인해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실, 손해, 우연한 신체 상해, 사망, 질환, 질병, 책임, 비용 또는 경비

3 이 공제를 가입하는 시점에서 귀하가 가지고 있었던 다음에 대한 모든 청구

- A 귀하의 공인된 다이빙 조직의 다이빙 적합성 설문지에서 언급한 모든 의학적 상태 중 다이빙 금지사항이 있는 경우
- B 레크리에이션 다이빙 이전에 앓고 있거나 회복 중이거나 치료를 기다리고 있던 기존 질병

4 다음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발생하는 모든 청구:

- A 출산 예정일로부터 12주 이내에 시작 및/또는 끝나는 여행과 관련된 임신 또는 출산.
- B 고의로 자해한 상해 또는 질병, 알코올 또는 약물의 영향(피공제자의 레크리에이션 다이빙 활동을 확실히 인지하여 인정하여 의사가 처방한 경우 제외) 및/또는 불필요한 위험에 대한 자해 노출(인명을 구하려는 시도가 아닌 경우)
- C 정신적 또는 정신 질환, 불안, 우울증 또는 스트레스, 섭식 장애 또는 관련 상태 및 보상하는 사고의 결과로 발생한 정신적 또는 정신의학적 장애
- D 레크리에이션 다이빙 사고의 결과로 직접적으로 식별할 수 없는 질병 또는 질환

5 피공제자의 자살, 자살시도, 위협에의 고의적 노출(인명구조를 위한 시도는 제외) 또는 피공제자의 범죄행위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장애

6 의학적 조언에 반하는 레크리에이션 다이빙

7 SCUBA와 함께 사용할 때 작살총(speargun) 또는 유사한 장치로 인해 발생한 모든 부상

8 공제사업자가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모든 프리다이빙 대회 또는 국내 또는 국제 기록 시도

9 피공제자의 법적 거주 국가로 돌아갈 수 있을 때의 비용금 의료비. 그 이후의 추가 비용은 사고 후 의료비(After the Event Medical Expenses, 보장 부문 5)에서 판단됩니다.

10 아래의 모든 다이빙

- A 공인된 다이빙 기관이 정한 안전한 레크리에이션 다이빙 관행에 대한 지침 및 권장 사항에 따라 수행되지 않은 경우
- B 귀하의 기록된 다이빙 기록을 통해 입증된 경험 및 귀하에 다이빙 자격증(Certificate)과 관련한 귀하의 공인된 다이빙 기관의 수심 권장 사항을 위반한 경우
- C 서면 제출 후 관리자(Administrator)가 사전에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수심 130미터 이상의 다이빙
- D 올바른 다이버 자격증(Certificate)이 없거나 기록된 다이빙 기록을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험이 부족한 경우의 다이빙

11 다음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발생하는 모든 청구:

- A 전쟁, 침략, 외국 적의 행위, 적대 행위(전쟁 선포 여부에 관계없이), 내전 또는 모든 행위, 조건 또는 전쟁 유사 작전
- B 정규 또는 비정규 군대 또는 민간 요원에 의한 전쟁과 같은 행위, 또는 실제 또는 예상되는 공격을 방해하거나 방어하기 위해 정부, 주권 또는 기타 당국이 취하는 조치
- C 폭동, 반란, 혁명, 권력 찬탈 시도 또는 민중 봉기 또는 이러한 행위를 방해하거나 방어하기 위해 정부 또는 군사

당국이 취한 조치

- D** 당사자가 언제 어떤 이유로든 핵분열, 핵융합 또는 화학적, 생물학적, 방사성 또는 유사 작용제를 사용하는 대량 살상 무기의 방출, 폭발 또는 사용

12 음속 또는 초음속으로 이동하는 항공기 또는 기타 공중 장치로 인한 압력파로 인한 손실, 파괴, 손상, 책임 비용 또는 비용

13 다음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원인이 되거나 발생하는 모든 청구:

- A** 핵연료 또는 핵연료 연소로 인한 핵 폐기물의 방사능에 의한 전리 방사선 또는 오염
B 폭발성 핵 조립체 또는 그 구성 요소의 방사성, 독성, 폭발성 또는 기타 위험한 특성

14 대한민국 외교부의 여행경보지역⁶ 중 3단계(출국권고), 4단계(여행금지),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지역으로 지정된 국가 또는 지역으로의 “여행/이동” 중에 발생하거나 원인이 되거나 발생하는 모든 청구.

15 “면허가 있는 상업 항공사가 운항하는, 면허가 있는 항공기를 이용한 승객” 아닌 항공 여행

16 응급지원 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수색 및 구조 비용

17 시스템 장애가 손실의 근인(proximate cause)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손실이 발생하는 일련의 사건에서 식별 가능한 요소를 형성하는 경우 시스템 장애로 인해 발생하거나 시스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청구.

시스템 고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계 및/또는 전자 시스템(피공제자의 재산인지 여부에 관계없이)의 오작동 또는 작동 불능을 의미합니다.

- 날짜 또는 날짜 변경에 대한 컴퓨터의 응답 또는
- 컴퓨터가 날짜 또는 날짜 변경에 응답하지 못하거나
- 피공제자 또는 제3자가 소유한 데이터의 손실 또는 접근 거부,
- 데이터 또는 소프트웨어의 손실 또는 손상 또는 변경 또는 변질.

18 당사는 컴퓨터, 컴퓨터 시스템 또는 웹사이트에 대한 해킹, 해킹, 보안 침해 또는 접근 거부 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컴퓨터라는 용어에는 컴퓨터 하드웨어, 컴퓨터 소프트웨어, 마이크로칩, 마이크로칩 프로세서, 모든 전자 장비 및 전자 지침이나 정보를 제공하거나 처리하거나 수신하거나 저장하는 모든 장치가 포함됩니다.

19 다이브 어시스트 상해보상공제 가입자를 위한 치료 업체(Dive Assist Diving Accident Membership Treatment Advice)에 명시된 지역에서 응급지원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목록에 없는 의료 시설에서 발생한 모든 의료 비용

20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해 부과된 제재,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공제사업자는 공제금/공제혜택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1 이 공제 계약에 따라 공제사고 접수 또는 공제금 청구를 할 수 있는 상해/사고 발생일로부터 31일 이내에 공제 사고 처리 담당자 또는 응급지원 회사에 보고되지 않은 부상/사고.

22 이 공제 상품은 면허가 있는 다이빙 스쿨 또는 다이빙 운영자와 함께 레크리에이션 다이빙 활동을 수행하는 동안 사고가 예상치 못한 우연한 방식으로 발생하지 않는 한 부러진 뼈 또는 뼈, 치아, 보조기 또는 구개 손상, 척추 골절, 인대, 힘줄 및 근육 손상으로 이어지는 모든 사고를 제외합니다⁷. 이러한 부상에 대해 보상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⁶ 해당 공제상품은 “다이빙 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한하여 보상을 제공하며, 여행자보험이 아닙니다.

따라서 동 면책조항은 여행자보험에서 보상하는 다이빙 활동 이외의 해당 지역으로의/에서의 “이동/체류 중 발생하는 사고”를 보상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행경보지역 내에서의 레크리에이션 다이빙 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는 해당 공제상품에서 보상이 되나, 해당 지역의 불안정한 정치 및 치안으로 인하여 수색/구조 활동 또는 국내 거주지로의 송환이 물리적으로 제공 불가능한 경우까지 해당 공제상품에서 보장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상에 대한 구체적 처리는 개별 사고의 지역 및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될 수 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여행경보지역은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지정하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며, 지역 및 시점에 따라 경보 단계가 변동되므로 방문 시점에서 해당 지역의 여행경보 단계의 확인 의무는 피공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 www.0404.go.kr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어플리케이션 :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 “해외안전여행 국민외교” 또는 “알고챙기고떠나고” 검색 설치

⁷ 면허가 없는 센터/강사와의 다이빙 활동 및 다이빙 외의 활동에서 발생한 신체상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고에 대하여 공제금 청구를 하는 경우 보험사기에 해당합니다.)

€3,000입니다.

23 레크리에이션 다이빙 사고의 결과로 직접적으로 식별할 수 없는 질병, 질환 또는 아픔

24 심근경색(심장마비), 뇌출혈, 뇌졸중, 동맥 폐쇄, 이명.

단, 감압병에 의한 심근경색(심장마비), 뇌출혈, 뇌졸중, 동맥 폐쇄는 보상합니다.

25 공제 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후에 통보 또는 제기된 모든 청구.

26 미국, 캐나다 및 그들의 영토 또는 소유지에서 발생한 사고 및 비용에 대해 미국, 캐나다 및 그 영토 또는 소유지의 거주자가 제기한 청구.

27 공제 증서상 지리적 제한(Geographical Limits) 밖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청구

28 귀하의 공제 증서는 다음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발생하는 어떤 방식의 청구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a)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를 선포한 **감염성 또는 전염성 질병**.

이 면책은 그러한 선언일자 이후에 이루어진 청구에 적용되며, 선언일 이전에 자격을 갖춘 의사가 관련 진단을 내린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면책은 WHO가 관련 PHEIC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때까지 계속 적용됩니다.

b) 위 사항에 대한 두려움이나 위협.

전염병 또는 전염성 질병은 감염된 사람, 동물 또는 종에서 다른 사람, 동물 또는 종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전염될 수 있는 모든 질병을 의미합니다.

a) 위 사항에 대한 두려움이나 위협

29 사이버 사고로 인해 발생하거나 발생하는 신체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모든 보상은 이 증서의 공제조건, 제한 및 면책사항에 따라 지급됩니다.

귀하의 공제 계약은 어떤 상황에서도 사이버 행위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신체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사이버 행위(Cyber Act)는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액세스, 처리, 사용 또는 운영과 관련된 무단, 악의적 또는 범죄 행위 또는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관련된 일련의 무단, 악의적 또는 범죄 행위 또는 위협 또는 기망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이버 사고(Cyber Incident)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 컴퓨터 시스템의 액세스, 처리, 사용 또는 작동과 관련된 오류 또는 누락 또는 일련의 관련 오류 또는 누락; 또는
-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액세스, 처리, 사용 또는 작동에 대한 부분적 또는 전체적 가용불가 또는 장애 또는 관련된 일련의 부분적 또는 전체적 가용불가 또는 장애.

컴퓨터 시스템(Computer System)이란 모든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 시스템, 전자 장치(스마트폰, 랩탑, 태블릿, 웨어러블 장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서버, 클라우드 또는 마이크로컨트롤러(유사한 시스템 또는 앞서 언급한 모든 구성 포함)를 의미합니다. **귀하** 또는 다른 당사자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관련 입력, 출력, 데이터 저장 장치, 네트워킹 장비 또는 백업 시설을 포함합니다.

보장내용 상세

보장 부문 1 – 응급 의료 및 기타 비용

1 레크리에이션 다이빙에 참여하는 동안 **피공제자**가 사고가 발생하거나, 다이빙 후에 발현된 상해 또는 질병을 겪고 치료 의사의 소견 및 **레크리에이션 다이빙** 활동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기인되었다고 **공제사업자**가 동의하는 경우, **공제사업자**는 다음 비용을 지급합니다.

A 다음과 관련하여 공제 상품 가입 명세서(Schedule)의 보장내용 요약서(Member benefits)에 표시된 응급 의료비:

- i. 응급 의료비, 입원비, 치료비
- ii. 즉각적인 통증 완화만을 위한 응급 치과 치료 비용 (다른 치과 비용은 제외되며, 보장내용 요약서에 명시된 한도까지만 보상)
- iii. 구급차 비용, 구조 서비스 비용, 합리적 숙박 및/또는 평소 거주 국가로의 교통비 및/또는 본국 송환 비용.

B 필수적으로 발생한 응급 고압 치료비 (보장내용 요약서에 명시된 보상한도액까지 한정)

C **피공제자**가 여행에 적합하다는 **공제사업자**의 의료 고문의 소견이 있고, **응급지원 회사**(Assistance Company)의 사전 승인이 있을 때, **피공제자**를 평소 거주 국가로 송환하기 위하여 **응급지원 회사**에서 발생한 응급 송환 비용 (보장내용 요약서에 명시된 보상한도액까지 한정)

조건

다음 행위의 발생 전에 **응급지원 회사**(Assistance Company)에 통지되어야 함이 필수 조건입니다.

- A **피공제자**가 여하한 병원, 진료소 또는 요양원에 입원하는 경우
건강상태의 심각성으로 인해 사전 통지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 귀하는 입원 후 가능한 한 빨리 **응급지원 회사**에 연락해야 합니다.
- B 본국 송환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 C 예정된 병원으로의 전원(hospital transfer) 또는 귀국 비용 발생
- D 이 보장부문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모든 필요한 치료 비용은 **사고 발생 후 최대 60일 이내에 처방되고 전달되어야 합니다.**

지원 전화: +44 (0)207 183 8910 또는 이메일: ops@northcottglobalsolutions.com

지원 회사에 연락할 때 귀하가 "다이브 어시스트 상해보상공제 가입자(Dive Assist Diving Accident Membership)"임을 알리고 공제 상품 가입 명세서(schedule)에 기재된 회원번호(Membership Number)를 알려 주십시오.

면책사항 (일반 면책 조항도 함께 적용)

이 공제 상품은 다음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피공제자가 의학적 조언에 반하여 여행하거나 치료를 받기 위해 여행⁸**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청구
- 2 **응급지원 회사가 "승인하지 않은"⁹** 다음 비용 및 경비:
 - A 외래, 입원, 진료소 또는 요양원 비용
 - B 송환 교통비 추가적인 호텔 또는 여행 경비 및 비용
 - C 피공제 회원이 거주하는 국가에서 제공된 서비스 또는 치료에 대해 부과되는 요금.

⁸ 다이빙 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따른 치료와 관계없는 치료(예: 치과, 피부, 성형수술 등)를 의미합니다. 해당 공제상품은 '여행자보험'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⁹ A~C의 비용은 **비용 발생 전에 응급지원 회사의 사전 승인**을 득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상됩니다.

3 선택적 의료 또는 치료 또는 탐색 테스트(검진)

4 고가의 재료를 사용하는 치과 작업

5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의견에 따라 피공제자가 일상적인 거주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합리적으로 미룰 수 있는 치료.

6 피공제자가 여행 출발 시점에 필요하거나 해당 여행 기간 동안 계속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의료비, 입원비 또는 치료비

7 공제금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12개월 후에 받은 서비스 또는 치료에 대한 비용

8 피공제자가 공립 병원 치료 또는 관리가 가능한 지역에서 사립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로 선택한 경우의 의료비

보장 부문 2 – 수색 및 구조

해상 안전을 책임지는 지역 해안경비대, 경찰 또는 기타 국내 또는 국제 응급 서비스에 의해/대신하여 승인되고 지시된 피공제자의 수색 및 구조를 위해 응급지원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은 비용은 공제 명세서에 기재된 가입금액까지 보상합니다.

보장 부문 3 – 합리적인 교통 및 숙박 비용

보장내용 요약서(Member benefits)에 표시된 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하며,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1 피공제자를 원래 거주지로 돌려보내는 비용. 해당 보상은 사고/부상 당시에 피공제자의 직계 가족 및/또는 여행동행인이 피공제자와 함께 동행한 경우 이들의 비용도 다른 보험(또는 공제)에 의해 보상되지 않고 공제 사고 보상 담당자(Claims Handler)가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확장하여 보상합니다.
- 2 다이빙 사고/부상 후 여행이나 비행(fly)을 하지 말라는 의학적 조언으로 인해 발생하는 치료 후 호텔 또는 숙박 비용(해당 비용이 다른 보험(또는 공제)에 의해 보상되지 않는 경우에 한정).
- 3 본 공제 증서에 의거하여 다이빙 사고 또는 부상 후 의학적 소견 또는 지속적인 치료를 받기 위해 귀하의 정상적인 거주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병원 또는 진료소를 왕래하는 것과 관련된 비용.

보장 부문 4 – 사망/영구장애에 대한 위로금

피공제자가 공제 기간 중에 레크리에이션 다이빙을 수행하는 동안 사고로 인한 부상을 입은 경우, 다른 원인의 개입 없이 해당 사고를 독립적 원인으로 하여 사고 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피공제자의 사망, 사지 절단, 한쪽 또는 양쪽 눈의 시력 상실 또는 영구적인 완전 장애에 대하여 아래의 보상한도액을 적용하여 보상합니다.

보상한도액

- 1 사망 – 가입 명세서(schedule)의 보장내용 요약서(Member benefits) 에 표기된 보상금액
- 2 수족의 절단 – 손목 관절 이상의 한 손 또는 양 손 및/또는 발목(거치 관절) 수준 이상의 한 발 또는 두 발의 물리적 분리로 인한 완전하고 영구적인 사용 상실을 의미하며 아래 금액을 보상합니다.
 - A 한쪽 수족 상실 – 가입 명세서(schedule)의 보장내용 요약서(Member benefits) 에 표기된 보상금액
 - B 두쪽 수족 상실 – 가입 명세서(schedule)의 보장내용 요약서(Member benefits) 에 표기된 보상금액
- 3 한쪽 또는 양쪽 눈의 시력 상실 –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는 완전하고 영구적인 시력 상실을 의미합니다.
 - A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6] 신체장애의 등급표를 기준으로 피공제자에 발급된 장애인단(또는

확인/인증)서를 통하여 양쪽 눈의 시력 상실이 승인되었을 때 - 가입 명세서(schedule)의 보장내용 요약서(Member benefits) 에 표기된 보상금액

B 한쪽 눈의 교정 시력이 0.05 (Snellen Scale 기준 3/60) 이하이고 **공제사업자가 피공제자**의 상태가 영구적이며 회복 가능성이 없음을 확인한 경우 - 가입 명세서(schedule)의 보장내용 요약서(Member benefits) 에 표기된 보상금액

4 영구적인 완전 및 회복 불가능한 청력 상실을 의미하는 한쪽 또는 양쪽 귀의 난청:

A 양쪽 귀 - 가입 명세서(schedule)의 보장내용 요약서(Member benefits) 에 표기된 보상금액

B 한쪽 귀 - 가입 명세서(schedule)의 보장내용 요약서(Member benefits) 에 표기된 보상금액

5 완전한 영구 장애

피공제자가 모든 유형의 사업 또는 직업에 종사하거나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는 상태로써, 대한민국 국민연금(National Pension Service)의 장애등급 심사 및 결정¹⁰을 받은 완전하고 영구적인 장애를 의미합니다.

피공제자의 거주지 공공 기관에서 장애를 공식적으로 인증하지 않는 경우, 피공제 회원은 그러한 완전한 영구적 장애가 i) 사고 날짜로부터 최소 연속 12개월 동안 지속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ii) 의료 보고서(의사소견서/진단서)를 통해 그리고 **공제사업자**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상태가 호전될 가능성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가입 명세서(schedule)의 보장내용 요약서(Member benefits) 에 표기된 보상금액 한도

보상조건

공제사업자는 동일한 사고와 관련하여, 상기 1~5 항목 중 하나 이상의 보상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장 부문 5 - 귀환 이후의 의료비

아래 비용의 합계액을 명세서에 표기된 보상금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1 귀하의 공공/국가 의료 서비스 제공자, 귀하의 사설 또는 직업 의료 서비스 제공자 또는 귀하의 건강 관리를 다루는 기타 자금 지원처¹¹로부터 회수할 수 없는 경우로써, **공제사업자 보상 담당자(Claims Handler)**가 동의한 귀하가 거주지로 돌아온 후의 추가 의료 비용;
단, 귀하의 거주지로 돌아온 날로부터 최대 60일까지 처방 및/또는 진료받은 비용급 의료 치료로 제한됩니다.¹²

모든 경우, 본 섹션에서 보장하는 치료에 대하여는 공제사고일(다이빙 사고일)로부터 365일 이내에 처방되고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비용에는 승인된 의료 요법을 위해 개업의가 주문한 서비스와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PFO(난원공 개존증, Patent Foramen Ovale) 검사가 포함됩니다.

2 국가 의료 서비스, 민간 의료 제공자 또는 기타 의료 제공처에서 제공되지 않지만 **공제사업자** 및/또는 **보상 담당자**가 수락한 이 증서에 따라 청구된 부상의 결과로 필요한 기타 합의된 비의료 및 수술 절차¹³ (단, 한의학적인 치료, 도수치료, 민간요법치료는 제외됩니다)

3 **공제사업자** 및/또는 **보상 담당자**가 동의한 승인된 의료진이 이 증서에서 보상하는 사고 이후의 다이빙 적합성 검사.

¹⁰ 국민연금의 장애등급 결정 관련 사이트 : https://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4_03.jsp

¹¹ 본 공제 상품 외에 **피공제자**가 가입한 다른 건강보험, 상해보험, 실손보험 등

¹² 공제사고를 사고 발생 즉시 통지하지 않고 상당한 시일이 지나 귀환 후 치료 받은 사항은 해당 사고와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해당 의료비에 대하여 보상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환 이후의 의료비를 보상받기 위하여는 사고 발생 즉시 공제사고 통지 및 귀환 후 치료의 필요성에 대하여 동의를 받아야 문제없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¹³ 재활치료(물리치료)의 경우 그 필요성에 대한 의사 소견서 제출 및 공제사업자의 보상 담당자(Claims Handler)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별 사고 및 치료에 따라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공제조건

이 보장 부문에 따른 보상은 **공제 기간** 중 처음 발생¹⁴하고 **레크리에이션 다이빙** 사고로 인한 부상에 따른 의학적 상태로 명확하게 제한됩니다. 기왕증(pre-existing conditions)에서 발생하는 청구는 모든 경우에 제외됩니다. 사고 발생일자로부터 90일 이내에 모든 치료가 진료받고 처방되는 것이 이 보장 부문의 조건입니다.

보장 부문 6 – 민사상 배상책임

본 약관의 정의 조항, 공제조건 및 면책조항의 적용을 전제로, **공제사업자**는 **공제 기간** 동안 발생한 **레크리에이션 다이빙** 사고로 인적 및/또는 물적 손해를 입혀 법적 배상책임이 있는 **피공제자**에 대하여 한 사고당 자기부담금 300유로 초과분에 대하여 공제증서 명세서에 표기된 보상한도액을 보장합니다.

공제조건

피공제자가 인지하고 있는 민사상 배상책임 청구를 인정하거나 답변하지 않아야 하며, **보상 담당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팩스 또는 송달, 전자 서신을 통해 소송 또는 청구(예견되는 청구 포함)사실을 즉시 통지해야 하며 이는 공제 계약의 요구사항입니다.

면책사항 (일반 면책 조항도 함께 적용)

이 공제 상품은 다음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A 미국 및 캐나다, 그들의 영토 및 소유지에서 **피공제자**에 대해 제기된 모든 소송.

B 아래와 관련한 배상책임

레크리에이션 다이빙 전문 교육 또는 감독과 관련한 결과로 발생한 배상책임,

귀하의 피고용인의 사망, 부상, 귀하 또는 귀하의 직원이 소유,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산에 대한 손해 및 모든 손실,

귀하 또는 귀하의 가족에 귀속하는 재산에 대한 분실 또는 손해,

귀하의 가정(household)에 귀속하거나 분실 당시 귀하 가정의 보호, 관리, 통제 하에 있던 재산.

¹⁴ 공제 사고가 공제 기간 내에 발생하여야 합니다. 공제 기간 전 발생한 사고의 귀환 후 치료가 공제 기간 내에 있었다라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공제금 청구 방법

본 공제 계약에 따라 공제금 청구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경우, **피공제자**(또는 법정대리인 또는 개인이 지정한 대리인)은 공제금 청구와 관련하여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1 가능한 빨리 **보상 담당자**(Claims Handler)에게 연락하거나 온라인 청구 양식(online claim form)을 작성하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도 청구 상황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연락하여야 합니다.

공제금 청구 양식(claim form) 작성법에 대한 지침은 **관리자**(administrator)에게 이메일 또는 전화로 문의하십시오.
(E-mail : claim@divemasterinsurance.com 또는 전화 : +44 (0)1702 476902)

보상 담당자에게 연락할 때, 다이브 어시스트 상해보상공제 가입 사항 및 명세서에 기재된 증서번호를 알려주십시오.

공제금 청구 양식을 완성하신 후 해당 양식에서 요구하는 모든 원본 영수증, 보고서 및 증거와 함께 청구 양식을 작성하고 발송합니다.

모든 청구는 원본 영수증, 감정, 의료, 경찰 또는 해당되는 기타 보고서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증빙의 수령 및 **응급지원 회사**(Assistance Company) 또는 **보상 담당자**(Claims Handler)의 사전 동의가 없는 비용은 본 증서에서 보상되지 않습니다.

특정 상황에서 **귀하**의 공제금 청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더욱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 2 의료비 청구 – 다음 조치를 취하기 전에 **응급지원 회사**(Assistance Company)에 먼저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A **피공제자**가 여하한 병원, 진료소 또는 요양원에 입원하는 경우

건강상태의 심각성으로 인해 사전 통지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 **귀하**는 입원 후 가능한 한 빨리 **응급지원 회사**에 연락해야 합니다.

B 본국 송환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C **피공제자** 시신의 매장, 화장 또는 운송

D 예정된 병원으로의 전원(hospital transfer) 또는 귀국 비용 발생

응급 지원회사 전화: +44 (0)207 183 8910 또는 이메일: ops@northcottglobalsolutions.com

응급지원 회사에 연락할 때 **귀하**가 다이브 어시스트 상해보상공제에 가입되어 있음을 알리고 공제 상품 가입 명세서(schedule)에 명시된 멤버십 ID를 알려주십시오.

의사 및 병원에 대한 통지: 공제사고 통지서 제출에 관한 추가 정보는 www.diveassist.org 또는 www.scubamedic.com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사기성 공제금 청구

귀하 또는 **귀하**를 대신하여 행동하는 사람이 이 공제와 관련하여 사기성 청구를 하는 경우, 당사는:

- 1 공제금 청구액을 지불할 책임이 없으며
- 2 공제금 청구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하**에게 지급한 금액을 **귀하**로부터 회수할 수 있으며
- 3 **귀하**에게 통지함으로써 사기 행위가 발생한 시점부터 공제 증서가 해지된 것으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위 조항에 따라 당사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 1 당사는 사기 행위 이후에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 **귀하**에게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2 **귀하**가 납부한 공제료는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이브 어시스트 상해보상공제 가입자를 위한 치료 업체¹⁵

(Dive Assist Diving Accident Membership Treatment Advice)

중요한 고지사항 : 아래 내용은 귀하는 공제 약관에 포함됩니다. “24시간 응급지원” 조항을 참조하십시오.
아래 국가에서 발생한 사고는 아래 치료 업체를 통해서 받은 치료비만 보상되며,
다른 치료 시설의 치료를 받는 경우는 보상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GYPT

Sharm International Hospital

Sharm El Sheikh

South Sinai

+2 069 366 0318 (phone)

Emergency +2 010 512 3964

Hyperbaric Medical Center

Travco Marina

Old Town Sharm

El Sheikh

+2 069 3660 922 (phone)

hyper_med_center@sinainet.com.eg

Marsa Alam Baromedical

Marsa Shagra

Marsa Alam +2 012 436 2222 (phone)

Emergency +2 012 243 3116

Hypermed- Hurghada

Located in front of Hurghada Airport Corniche

Road (Nr. Arabia Resort)

Hurghada

+2 012 2187 550 (phone)

Emergency +2 010 218 7550

Naval Hyperbaric Medical Center (NHMC)

Corniche Road Sekala Hurghada

+2 065 3449 151 (phone)

Emergency +2 065 3449 150

JORDAN

AQABA DIVING CHAMBER

Prince Hashem Hospital

Aqaba

Jordan

DR Ismael Nagadat +962 790462076

MEXICO

COSTAMED

50 Avenida Sur Bis, Adolfo López Mateos, 77622 San Miguel de Cozumel, Q.R., México

Abierto 24 horas

Teléfono: +52 987 872 5050

Merida

Clinica de Merida

Av. Itzaes No.242 Colonia Garcia Gineres

Merida

TEL: +52 999 920 3913

¹⁵ 해당 병원 리스트는 명기된 국가에 한정되며, 그 외의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응급치료는 “24시간 응급지원” 조항 또는 공제 상품 가입 명세서(Schedule)에 기재된 응급 지원 회사(Assist Company) Northcott Global Solutions Ltd와 연락 후 조치하시면 됩니다.

Cyprus

다이버들은 아래의 Famagusta, Paphos 또는 Larnaca 종합 병원 중 의학적으로 선별해야 하며, 추가 치료를 위해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할 수도 있습니다. DAN International의 권고에 따라 당사는 다이버들의 진단을 위하여 항상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권고드립니다. Famagusta, Paphos, Larnaca 는 모두 적합하며 권장되는 종합 병원입니다.

Famagusta General Hospital

Christou Kkeli 25

Paralimni

Tel: + 357 23 2 00000

Paphos General Hospital

Anavargos Street

Anavargos Paphos

Tel: +357 26 240200 / 803 100

Larnaca General Hospital

Hyperbaric Center

Mystra Larnaca

Tel: +357 2480 0500